

#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

<최종공포일 2016.12.25.>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가 행하는 부산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항의 항만시설 중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이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 항만구역과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항만시설을 말한다.
2. “항로”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이라 한다.)제10조 규정에 의거 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말한다.
3. “부두”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안벽, 물양장, 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을 말한다.
4. “선석”이란 함은 수역시설 중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박지”란 수역시설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6. “특별관리선박”이란 장기계류선박, 감수보존선박(경매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선박은 제외), 강풍취약선박(자동차 운반선, 여객선 등)을 말한다.
7. “물양장”이란 전면수심이 4.5m 이내 이고, 1천톤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부두로 주로 어선·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부두를 말한다.
8. “소형선 집단계류지”란 부선, 급수선 등이 집단으로 계류하는 곳을 말한다.
9. “계선장”이란 “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계선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해면으로써 청장이 지정하는 정박지를 말한다.
10. “계선부표”란 선박을 해상에 계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특수 부표를 말한다.
11. “장치장”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 등 화물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12. “에이프런”이란 부두의 선석에 인접한 곳으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을 말한다.

## 2. 기능시설

### 가. 계류시설

#### (1) 선 석

##### ① 북 항

부두별	선석명칭	수심(m)	길이(m)	접안능력(DWT,척)	취급화물
연안여객부두	MB1-00	4	120	200×2	·여객 ·카페리 화물
	MB1-01	6.5	120	3,000×1	
	MB1-02	9	220	10,000×1	
	MB1-03	9	192	10,000×1	
제1부두	MB1-04	9	200	10,000×1	·컨테이너 ·잡화
	MB1-05	9	237	10,000×1	
제2부두	MB2-01	9	200	10,000×1	·컨테이너 ·잡화
	MB2-02	9	188	10,000×1	
국제여객부두	MBF-01	12	360	170,000(GT)×1	·여객 ·컨테이너 ·잡화
	MBF-02	9	240	50,000(GT)×1	
	MBF-03	9	60	500×1	
	MBF-04	9	60	500×1	
	MBF-05	9	60	500×1	
	MBF-06	9	60	500×1	
	MBF-07	9	60	500×1	
	MBF-08	9	60	500×1	
	MBF-09	9	60	500×1	
	MBF-10	9	60	500×1	
	MBF-11	9	240	20,000×1	
	MBF-12	10	240	20,000×1	
	MBF-13	10	240	20,000(120,000GT)×1	
	MBF-14	9	240	20,000(120,000GT)×1	

부두별	선석명칭	수심(m)	길이(m)	접안능력(DWT,척)	취급화물
신 선 대 행정선부두	MBS-SA	5.5	123	1,000×1	·관공선, 유조선
신선대 부 두	MBS-01	14	300	50,000×5	·컨테이너
	MBS-02	14	300		
	MBS-03	16	300		
	MBS-04	16	300		
	MBS-05	16	300		
동명부두	MBD-01	5	101	1,000×1	·유류 ·모래 ·잡화
	MBD-02	5	139	5,000×1	
	MBD-03	5	50	500×1	
	MBD-04	5	95	1,000×1	
용호부두	MBQ-01	11.0	210	20,000×1	·컨테이너 ·위험물 ·냉동어획물
관 공 선 부 두	MBK-01	5	175	30×3 300×10 1,000×10	·관공선
SK돌핀	MBE-Q3	7.5	150	5,000×1	·유류
감만부두 동측안벽	MBE-Q2	7.5~11	471	5,000×2 20,000×1	·잡화 ·유류
인천정유돌핀	MDK-01	7.5	130	3,000×2	·유류
칭학안벽	OLH-01	4.5	794	3,000×3 1,000×3	·수리
동삼안벽	OLS-01	4.5	378	1,000×3	·수리